

제 호

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

1. 기관명:
2. 주소:
3. 대표자:
4. 업무범위:

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장관(처장)

직인